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송주용)

가. 제안이유

-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신고대상에 상근인력 및 민간위탁기관 등 추가(안 제2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신고기한 변경(안 제4조)

- 보상금 환수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에서 적용 대상을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상근인력,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등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안 제4조는 부조리 신고 기한을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설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현 조례에서 보상금 환수를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이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와 강제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고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환수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기한 및 신고보상금 환수 절차 등 현 규정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3 호
----------	---------

제출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신고대상에 상근인력 및 민간위탁기관 등 추가 (안 제2조)
- 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신고기한 변경 (안 제4조)
- 다. 보상금 환수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 나.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원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다. 입법예고(2020. 9. 8. ~ 9. 28.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현하는데**”를 “**구현하는 데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를 “부조리”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
의 임직원

2. (생략)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
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
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
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
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2.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
지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
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
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

-----.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③ (생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

-----.

② 보상금-----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고자에

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